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문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금지하고 부정청구로 얻은 이익의 환수 및 제재를 위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배경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도 증가

부정청구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웠던 상황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공공재정지급금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보조금·보상금·출연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 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재정기관 부패·횡령·유착·대장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이익의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의 금액의 5배 이내 부과

허위청구



부정이익의 금액의 **×5**

과다청구



부정이익의 금액의 **×3**

목적 외 사용



부정이익의 금액의 **×2**



명단 공표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 공표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
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경찰, 검찰)



신고자 보호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고자 보호제도

책임감면

신변보호



부정이익의 환수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



부정이익의
환수



이자
※ 연 1.8%



신고자 보상금·포상금 지급

보상금 지급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6